

# 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과 환경책임법제의 동향

조은래\*

## 차 례

- I. 서설
- II.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 III. 환경책임법제에 관한 동향
- IV. 결어

## [국문초록]

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의 주요특징은 통합적 환경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제품관리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지침(IPPC)과 REACH, 환경공개지침, 그리고 오르후스 협약 등에 의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EU위원회는 통합적 제품정책(IPP)을 발표하여 해당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측정함으로써 제조단계부터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책임법제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고, 환경기준위반을 방지하여 지역 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책임지침을 제정하여 이 지침이 채택된 나라에서의 환경손해의 방지와 회복, 환경부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위험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손해의 배상책임 혹은 환경부하의 미연방지와 원상회복에 관한 공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미리 책임이행 담보제공을 의무로 할 것을 도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환경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에 대해 권한발동을 구하는 간접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입법하고 실시해온 EU 나라들의 동향을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조교수

## I. 서설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고, 환경손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사후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이에 환경정책과 관련법제는 사전적 측면의 환경보전(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등을 포함)과 사후적 측면의 환경손해에 대한 구제를 과제로 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정책은 1987년의 단일유럽의정서의 발효에 따라서 EU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확립되었다. 「유럽공체를 설립하는 조약(로마조약, EU조약)」에 있어서는 이하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첫째 환경에 대한 예방적 활동, 둘째 환경손해의 미연방지에 초점을 두어 비용에 대한 효과를 높일 것, 셋째 오염발생원에 대한 대응우선의 조치, 넷째 오염자부담원칙 등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EU 환경보전에 대한 최근의 주요한 특징은 통합적 환경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제품관리 등이다. 2002년에서 2010년의 EU의 환경전략을 결정짓고 EU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정한 제6차 환경행동계획에도 이러한 문제를 착수하였다. 즉 현행의 환경법제를 확실히 실시하고, 다른 EU의 정책에 환경으로의 배려를 조성하며, 시장과의 협동, 시민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충하며, 환경을 증시한 국토이용을 전개하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환경규제의 범주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sup>1)</sup> 그리고 환경손해에 대한 환경책임법의 동향은 첫째 종래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사실의 완화와 그 입증의 완화 및 전환, 둘째 이른바 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법적구제에 해당하는 책임, 셋째 공법상의 규제준수 및 준수위반에 대한 사법적 평가, 넷째 책임이행 담보제공의무의 제도화 등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EU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환경에 위험한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의 Lugano협약(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Damage Resulting from Activities Dangerous to

1) 전재경,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83면. 직접적인 환경규제는 오염통제(pollution control)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이 영역에서는 오염시설의 허가가 핵심과제였다.

the Environment)을 채택하고, 같은 해에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그린 페이퍼(Green Paper on Remedying Environmental Damage), 2000년 환경책임에 관한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2004년의 환경책임에 관한 EU지침(EU Directive on Environmental Liability)<sup>2)</sup>, 2007년 독일의 환경손해의 회피 및 제거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손해법이라고 한다) 등을 통해 생태계와 오염지역에 대한 피해 등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sup>3)</sup>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의 측면과 환경피해의 구제 측면을 상관적으로 규율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손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환경책임에 대한 법제도를 통한 시사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선행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하에서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입법하고 실시해온 나라들의 동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EU의 환경보전과 환경책임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 1. 통합적 시설관리

환경개체마다의 개별적 접근에서부터 통합적, 포괄적 접근이 인·허가와 관련되어 구체화된 것이 1996년에 채택된 환경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이하 IPPC라고 한다)지침<sup>4)</sup>이다. 이 지침의 기본원리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2) Directive 2004/35/EC of 21 April 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

3) 김기순,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월간법조」 통권 제629호, 2009, 204면.

4) Council Directive 96/61/EC of 24 September 1996,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이하 BAT라고 한다), 유동성(Flexibility), 주민참여(Public Participation)로 이루어진다.<sup>5)</sup> 이 지침의 목적은 특정의 산업설비를 가진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허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환경을 전제로서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경우 오염물질의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혹은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다.<sup>6)</sup>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혹은 기존의 산업설비의 조업허가에 관한 법적인 틀을 규정한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은 사전의 허가가 없으면 조업을 할 수 없다. IPPC 지침의 대상이 되어 조업에 선행적인 종합적 허가가 필요한 시설은 IPPC 지침의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산업설비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sup>7)</sup> 이 대상이 되는 시설의 조업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AT)을 사용하여 설정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sup>8)</sup>

이와 같이 EU 전체에서 통합적 접근(approach)을 채용하고 있는 배경은 종래의 기준치를 준수시키기 위한 구조로서의 인·허가제도는 다종다양한 환경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물질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을 취하기

5) 김혜영의 2인, “유럽연합 통합환경관리지침(IPPC Directive)의 변화”, 『학술발표자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8, 45-46면 참조.

6) 최근 EU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 6월에 산업분야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황, 질소 화합물의 배출, 먼지류, 석면 및 중금속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철강, 발전소, 정유업체 등 중화학산업에 적용되며, 2016년까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별 오염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단 오래된 화력발전소와 같은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09-7호, 24면.

7) 예를 들면 화학 산업이 가지는 하로켄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화학시설을 들 수 있다. 그 대부분이 제조업이지만 에너지 산업, 폐기물처리업이 가지는 산업시설 등도 포함된다. 연구, 개발, 신제품 및 실험실의 실험을 위한 시설은 이 지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지침 부속서 1).

8) 또 EC의 대기와 수질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BAT를 고려한 배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시에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제10조). 상기의 허가조건에 합치되고 있는 것을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5항). 배출기준의 준수에 더하여 조업자는 시설의 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하의 일반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에도 배려하여야 한다(제3조). 즉 BAT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것, 폐기물지침에 기초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것, 배출된 폐기물을 재활용할 것,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은 환경으로의 영향을 회피 또는 감소하도록 처리할 것,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시설의 조업종료 시에는 오염발생의 위험을 회피하고, 당해지역을 안전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이다. 松村弓彦, “環境保全法に關する國際的動向”, 『環境法』, 成文堂, 2007, 512-5137면.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시책이 필요하다.<sup>9)</sup> 또한 EU 가맹국 간에는 경제력과 지역적 특성, 환경시책의 대응 등에 차이를 두기 위하여 개개의 배출기준과 환경기준설정으로 EU 전체의 깨끗한 환경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한 형편이다. 그 때문에 환경고려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sup>10)</sup>

한편, IPPC 지침의 의의는 종합적인 인·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1990년 전까지의 물질, 환경매체마다의 임시방편적 대책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던 환경부하의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개별적 환경매체의 대책에는 하나의 환경매체의 오염이 경감되어도 다른 환경매체로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종합적으로 보면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없었다. IPPC 지침은 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인·허가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저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가령 과학적 식견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개개의 환경매체의 기준설정이 어려운 물질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적 대책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유연한 선택을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적 인·허가 제도의 도입은 오염발생의 미연방지, 발생원대책의 촉구, 공정의 변경 등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업자에게 공정의 변경 등에 의한 비용삭감의 효과를 가져 오며, 배출규제보다도 환경면에서의 합리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sup>11)</sup>

9) EU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12년부터 130g/km, 2020년 95g/km으로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EU에서 생산된 제품이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탄소 국경조정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신축적인 대응하여 해외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31호, 2008. 8. 8, 13면.

10)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을 지난 2011년 3월 8일에 발표하고, 이를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EU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중간목표는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0% 감축하는 것이다.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11-1호, 34-40면 참조.

11) M.G. Faure and J.G.J.Lefever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an Economic Appraisal", Lowe and Ward, British Environmental Policy and Europe, 1998, pp. 26-28, p. 102.

요컨대 종래의 개별적 규제접근은 복수의 행정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동종의 규제가 중복해서 실시되었지만, 종합적 인·허가 제도는 그러한 행정비용과 조업자의 사무비용의 삭감에도 연결된다. 이러한 IPPC 지침은 환경면에서도 경제면에서도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환경정보공개

### 가. IPPC 지침

IPPC 지침의 채택은 EU의 환경정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제4차 행동계획에서 제6차 행동계획에 이르기까지의 발생원대책, 통합적 오염관리, 시민의 환경시책으로의 참여, 파트너 쉽이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IPPC 지침만 본 경우, 이것이 직접시민참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이바지 하는 제도로는 볼 수 없지만, IPPC 지침안에 도입된 오염물질 배출등록제(European Pollutant Emission Register : EPER)는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OECD에서 권고한 오염물질배출·이동목록제도(Pollutant Release Transfer Register : PRTR)와 같이 공정에서부터 배출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며, 그 배출정보는 정보공개를 보다 철저히 하게 되어 있다. IPPC 지침 전문 24-26조에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책임과 투명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모든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및 시설 가동에 대한 정보, 환경 영향 등의 내용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르후스(Aarhus) 협약에 의하여 주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sup>12)</sup> 지금까지의 각국의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도 공개등록부에 의한 정보입수는 가능했지만, 정보의 기초인 데이터는 당국의 재량에 의한 것이었다.

요컨대 통합적인 관리제도가 채용됨에 따라 종래의 개별적 법규제에 의해서 취득되어진 데이터가 일원화되어 시민에게 입수가 매우 쉬운 형태로 제공되게 되었다. 종합적 오염관리 접근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배출발생 방지행위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법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2) 김혜영의 2인, 앞의 논문, 46면.

## 나. REACH

환경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독성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EU는 「안전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종래에 행정기관이 수집책임을 부담해온 것을 기업에 전가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의 확실성을 완수하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1년 2월에 「금후의 화학품 시책의 전략」이라고 하는 백서<sup>13)</sup>를 발표하여 대량의 기존화학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품 시책으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시스템을 구축하였다.<sup>14)</sup> REACH 시스템은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쌍방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를 받는 것을 EU 회원국 내의 제조자, 수입자, 하부사용자에게 의무화하여 제한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REACH의 중심이 되는 등록에는 지역 내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성상, 독성데이터, 용도, 초기 리스크 평가(제조량 10톤 이상)를 유럽화학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 2007년 6월에 설립)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정보에 대한 책임과 발생하는 리스크는 기업 측에 요구되어지며, 유럽화학품관리청은 기업비밀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6)</sup>

EU는 유해제품(음식, 의약, 의료기기 제외)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기

13) White Paper : Strategy for a Future Chemicals Policy. 이후 REACH규칙이 제정되었다.

14) 2003년 10월에 EU위원회에서 법안(초안)이 발표되었고 2006년 12월 EU의회의 표결을 거쳐 EU각료 이사회의 승인 후 최종 공포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5) 이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에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EU에서 제정한 신화학 물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REACH)는 산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평가하며,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화학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16) EU의 REACH 시행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직접비용의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REACH 대응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간접비용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 국내 전문기관 등에서는 2018년까지 최대 4조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시적인 기업의 지원정책에 그치지 않고 REACH 대응정책으로서 간접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산업연구원, 「EU REACH 제도 시행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KIET 산업경제」, 2008년 9월호, 58면 이하 참조.

경보시스템인 Rapex(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consumer good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 REACH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적발한 사항들을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sup>17)</sup>

### 3. 시민참여

#### 가. 정보공개지침

EU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1990년의 「환경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에 관한 이사회지침(Directive on the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 이하 환경정보공개지침이라고 한다)」<sup>18)</sup>이다.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가맹국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환경정보를 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각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의 제정배경은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시민참가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전제로서 환경정보에로의 접근확보의 중요성도 인식되었던 점이다.<sup>19)</sup>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최근의 동향으로 EU의 수명구역 수질관

17) <[http://ec.europa.eu/consumers/dyna/rapex/rapex\\_archives\\_en.cfm](http://ec.europa.eu/consumers/dyna/rapex/rapex_archives_en.cfm)> REACH 규정위반사례로 2009. 6—11, 6개월간 총 위반건수는 112건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대부분(78.5%)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100, 미국 2, 유럽 4건의 순이다. 위반 제품군은 완구류가 70건(62.5%)으로 가장 많고, 중국산이 대부분인(62건)이며, 의류/섬유/패션품목 18건(16.1%) 중, 중국산 9건, 인도산 6건이며, 화학 제품류는 13건(11.6%)이며 중국산 9건으로 가장 많다. 위반제품들에 대한 조치로서는 회원국들은 위반 제품들에 대하여 수입거부, 시장회수명령, 판매금지 명령, 소비자 리콜명령 또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수입자·판매업자들은 자발적 판매중지, 자발적 회수 및 폐기,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10-1호, 19면.

18) Council Directive 90/313/EC, of 7 June 1990.

19) 또한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사고와 바젤 화학공장사고에 의한 라인 강의 오염이라고 한, 국경을 초월한 환경오염을 계기로 유럽각국에 있어서 시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비를 가속하였다. 한편 1986년에 제정된 미국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법이 성과를 올린 것도 그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지침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7년 10월에 결의된 EC의 제4차 환경행동계획(1987-1992년)이었다. 이 행동계획에는 「환경행정기관이 소지한 정보의 대중적 접근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환경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을 조사해야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지침은 이것을 이어받아 1990년에 채택되었다.



리정책이 주목된다. 즉 수질 모니터링에 근거한 수영구역 수질관리로 수영객의 건강보호와 수질개선은 물론, 국민의 환경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1976년에 EU의 수영구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연례보고서 등은 수영구역 수질개선과 광범위한 일반의 인식증진에 기여하였다. 그 후 2006년에 새로운 지침이 제정되어 오는 2014년 12월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회원국들은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EU환경청은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EU전역에 걸쳐 매년 수영구역의 수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sup>20)</sup>

#### 나. 오르후스(Aarhus) 협약

환경정보공개지침과 함께 현재의 유럽에서 중요한 국제문서는 국제연합 유럽경제 위원회(ECE :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주도에 의해 기초된 「환경정보로의 접근,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참여 및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사법으로의 접근에 관한 협약」<sup>21)</sup>(이하 오르후스 협약이라 한다)이다.<sup>22)</sup>

오르후스 회의에서 환경에 관련된 3개의 권리가 보장되었다. 첫째 정보를 수집할 권리이다. 시민들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고의·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 제공된 정보는 일반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정한 권리이다. 시민들의 보장된 권리가 부적절하게 부정된 경우,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셋째 의사결

20) 유럽은 1970년대 이미 수영객의 건강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수영구역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EU지침제정, 연례보고서 발간, 환경정보제공, 웹기반 수질공개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14년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의무적으로 수영구역 수질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수영구역내 표시, 라디오, 인터넷, TV방송,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례 보고서 및 웹 기반 수질공개 시스템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및 휴가 대상지의 수질상태를 체크하고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EU환경청과 국가별 담당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과 관찰사항을 수렴한다. 위터저널, “유럽의 수영구역 수질관리 정책”, 물사랑신문사, 2011. 6월호, 91면.

21) Convention on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22) 이 협약은 1998년 6월 25일에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열렸던 EU각료이사회에서 14개의 가맹국에 의해 조인되었다.

정에 참가할 권리이다. 시민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가할 최저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것을 조문화한 오르후스 협약은 EU의 환경정보 공개지침과 같이 시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의 리오선언 제10 원칙에서 내세운 목표<sup>23)</sup>를 달성한 후에 극히 중요한 진전이 된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이 협약이 시민참여에 관한 환경협약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고 상세한 것이다. 오르후스 협약에서 확인된 3개의 권리, 즉 환경정보로의 시민의 접근, 환경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의 시민참여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司法의 접근<sup>24)</sup>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러한 것들이 협약의 중심이 되고 있다.<sup>25)</sup>

이와 같이 오르후스 협약은 시민참여를 위한 환경정보공개의 국제적인 근거규정으로 되었지만, 정보공개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정보가 이 협약에 기초하여 수집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충분한 환경정보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르후스 협약이 국내법화 되어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 협약은 정보를 수집·전달하기 위한 특정의 절차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가 점차 단계를 밟아서 실

23) 환경과 개발에 관한 1992년 UN선언, 1992.6.13, UN Doc. A/CONF. 151/26/Rev.1(1992) 31 I.L.M. 876, 원칙 10 “원칙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4)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김현준, “환경사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참조.

25) 22개의 규정으로 된 이 협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협약의 목표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의 설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오르후스 협약의 환경관련정보에 대한 조항에서 정해진 의무는 「시민의 정보로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과 「정보수집 및 전달을 위해 특정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sup>1)</sup>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5조에서는 행정기관에게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와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정보를 행정기관에 전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개인 및 NGO를 위한 환경정보로의 일반적인 액세스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인 및 NGO가 당해 사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하고 있지 않다(4조 1항). 이 권리는 EC의 여러 단계 등, 모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적용된다. 또한 공적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민간단체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민영화된 공익기업 등의 단체도 포함된다(2조2항). 이 조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병천, “최근의 국제법 입법소개 A arhus 협약”,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243면 이하 참조.

시해 올 것을 요구하는데 지나지 않아 실시의 시기는 각국의 정보공개시스템 확립의 열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협약내용의 실시면에 있어서는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정보의 접근을 규정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4. 통합적 제품관리

이상에서의 통합화, 환경정보공개, 시민참여 등과 아울러 유럽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관리의 동향이다. EU위원회는 2003년 모든 제품의 제조과정에 환경적 배려를 편성하기 위한 전략 및 통합적 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이하 IPP라 칭한다)을 발표하였다.<sup>26)</sup> 이것은 REACH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으로서 원료조달에서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폐기물을 정량화하여 해당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측정함으로써 제조단계부터 규제하는 정책이다. IPP는 화학제품, 제지, 식료, 전자기기, 소비재 등 모든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유통, 이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환경부하의 경감을 목표로 하여, 제품가격에 오염자부담의 원칙(PPP)을 응용하고, 기존의 에코 라벨제도를 이용해서 라벨 첨가가 허가된 제품에 대해 부과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는 우대조치를 제안하였다.<sup>27)</sup>

#### 5.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통합적 환경관리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오염물질 통합관리, 오염배출원 통합관리, 지역환경 통합관리의 3가지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관리

26) 공성용·김상헌, “유럽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의 논의 동향”, 『환경포럼』 제8권 제15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참조.

27) 참고로 EU의 IPP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5년 환경친화적 제품 디자인 의무에 관한 토론 문서 마련, EU차원의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개발여부결정, LCA 편람발간, 2006년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에 관한 실천계획마련, 2007년 환경개선 잠재력이 큰 제품의 선정, IPP 추진상황에 관한 이사회 및 의회보고 등이다. 공성용·김상헌, 앞의 논문, 4면 참조.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고려될 수 있지만, 기존의 국내법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선에서」 개정·신설 등의 입법 작용을 통하여 통합적 환경관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sup>28)</sup>

2010년 1월 현재 환경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수출기업의 REACH 대응에는 성공적인 편이다. EU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EU 수출기업은 REACH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분석되어 유럽화학물질청의 REACH 규정위반 사례 발표 결과, 우리나라의 위반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2011년 4월 2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sup>29)</sup>, 녹색기업에 대한 보고·검사의무가 면제되는 법률을 추가하였다.<sup>30)</sup>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는 일반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이 있지만 환경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인적격이나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는 통합배출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로서, 의견제출, 공청회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상의 제도가 보장됨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31)</sup>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가의 법제도정비의 동향은 있지만<sup>32)</sup>, EU와 같이 제품관리에 대한 것은 아직 없다.<sup>33)</sup> 따라서 주민들이 환경부하를

28) 한상훈,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3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85면 이하 참조.

29) 2010년 12월 30일 환경부는 기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본격 도입을 위한 초석으로 녹색기업의 환경정보를 정리, 분석한 ‘2010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리포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보의 공시를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30) 환경부 보도자료, 2011. 4. 26.

31) 한상운외 4인,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148-151면 참조.

32) 2003년 10월 7일 제정된 환경부훈령으로 「환경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다.

33) 통합제품정책(IPP)은 관리의 대상을 배출원이 아닌 제품으로 간주하며,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단계 전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여 어느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저감하기 위해서는 제품관리를 환경적인 것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EU의 제품관리의 동향은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

### III. 환경책임법제에 관한 동향

#### 1. 불법행위의 요건과 입증책임의 완화

##### 가. EU의 동향

오늘날 국제환경법은 국경을 넘는 환경손해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민사책임 제도를 발전시켜왔다.<sup>34)</sup> EU에서는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성립요건 중,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책임을 제도화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법규의 형식적으로는 네덜란드의 경우 민법전개정에 의한 예(6편176조 이하), 독일의 경우 특별법 및 개별법에 의한 예 등이 있다. 독일의 환경책임법(1조, 3조)<sup>35)</sup>, 수자원관리법(22조), 유전공학법(32조 1항), 원자력법(25조) 등에서 각 법의 적용영역 고유의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sup>36)</sup> 이것은 손해배상의무를 오로지

---

지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삭감수단을 찾는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품의 전 생애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나 정책 수단 등을 함께 평가하여 오염물질 삭감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상충되는 규제는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성용, 김호석, 이병국, 정재현, “제품군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 통합제품 정책(IPP) 도입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2-3면.

34) FITZMAURICE, Malgosi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 Bodansky, J. Brunnee & E. Hey (eds.), 2007, pp.1010-1035, p.1024, ; BOYLE, Alan, Globalising Environmental Liability : The Interpla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1, 2005, pp. 3-26, pp. 4-5, etc.

35) 일정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즉 물질, 진동, 소음, 압력, 빛, 가스, 증기, 열 또는 지하, 공중 혹은 수중에서 확산한 그 외에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손해 또는 물질 손해에 대하여 위험책임을 진다.

36) 최명구,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331면 이하.

고의·과실로 유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반 사법적 환경책임과는 달리 과실책임의 원칙을 배제하고 위험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요건사실의 입증에서 독일환경책임법이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의 추정을 제도화 한 것(6조 1항)과 피해자가 가해자인 시설 설치자 및 행정청에 대한 정보청구권(8조, 9조) 및 청구를 받는 사업자, 피해자, 다른 사업자 및 행정청에 대한 정보청구권(10조)을 제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완화를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sup>37)</sup>

EU는 2004년 4월에 환경책임과 관련된 기존의 법제와 차원이 다른 이른바, 「환경손해의 미연방지와 회복에 대한 환경책임에 관한 지침(Richt über Umwelthaftung und zur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이하 EU 환경책임지침이라고 한다)」<sup>38)</sup>을 제정하였다. EU 환경책임지침은 채택된 나라에서의 환경손해의 방지와 회복, 환경부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고, 환경기준위반을 방지하여 지역 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 EU의 환경책임지침을 국내법을 전환하여 공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환경손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 활동으로 인해 환경손해를 유발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사실상의 무관실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손해 및 손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책임자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발생한다. 즉 정보제공의무, 위험방지의무, 손해제거의무, 회피 및 제거조치의 비용부담, 관할행정청의 감시의무 및 환경손해 제거의무의 관철활동, 권리보호, EU회원국과의 협력의무 등이다.<sup>39)</sup>

37) Gerhard Igl(번역: 서보국), "Umwelthaftungsrecht in Deutschland", 「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0, 45면 이하 참조.

38) 예방에 대한 환경책임과 손해를 구제하는 2004년 4월 21일 유럽의회의 EU지침 2004/35/EU(O.J.L. 143, 56).

39) 독일의 경우 중대 환경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법과 각 환경영역별 개별법에서 법적인 해결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사법적인 차원에서 손해의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한 손해 및 훼손된 환경에 대한 충분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문병효, "독일환경손해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0, 244면-253면 참조.

## 나. 우리나라의 법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중, 고의·과실의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광업법(제91조), 수산업법(제82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4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였다. 한편, 환경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입증에 대해서는 환경책임 고유의 특칙은 존재하지 않는다.<sup>40)</sup> 피해자 측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특히 곤란하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상의 요건사실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sup>41)</sup>

요컨대 환경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의·과실의 요건은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도 그 완화 및 전환이 개연성론으로 확립되어 있다.<sup>42)</sup>

## 2. 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및 법적구제

### 가. 문제의 소재

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법적구제는 전통적인 보호법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법제도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공법상·사법상의 해결이 모색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동방지협약, 남극조약에 기초한 남극환경보전의정서 등의 국제적인 법적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EU 수준에서는 환경책임지침에 근거하는 국내법화가 지향되고 있다.<sup>43)</sup> EU 환경책임지침은 ① 보호대

4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개연성에 근거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1조).

41)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42) 조은래, 「환경법」, 세종문화사, 2003, 214면 이하 참조.

43) 유럽집행위는 2009년 11월 20일에 EU 환경책임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핀란드가 최종 서면경고를 송부하였다. 이 판결은 환경에 대한 피해에 관한 책임에 대한 EU 지침을 핀란드가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관련된다. 국내법 전환이 이제 본토에서는 완료된 한편,

상인 종(Arten) 및 자연의 생활공간의 훼손, ② 수자원에 대한 가해(환경적, 화학적 양적상태, 그 수자원의 환경상의 잠재적인 중대한 악영향을 가져오는 손해), ③ 토양에 대한 가해(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물질, 생물 또는 미생물의 반입에 의해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토양오염)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의 손해 및 가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확정 가능한 자연자원(중, 자연적 생활공간, 물, 토양)의 불리한 변경 또는 자연자원의 기능 침해를 말한다(2조 2항).<sup>44)</sup>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공권적 간섭권한을 가지지만, 일정한 자에게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간섭권한발동을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12조).

환경손해의 미연방지와 법적구제를 위해서는 ① 일반적 예방, ② 구체적 미연방지, ③ 사후조치(원상회복, 대상조치, 손해배상 및 전보) 등 3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한편 행정법상의 적법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와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경우를 함께 통찰하는 것이 요구된다.<sup>45)</sup>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으로부터의 접근과 형법을 포함한 공법으로부터의 접근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지만, 환경이 공공재인 것, 일반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등의 이유로 사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법의 역할이 크다.

#### 나. 환경손해의 정의

실정법상으로 몇몇의 예외<sup>46)</sup>를 제외하고는 환경손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

이 지침은 앙랜드 주에서 법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기한은 2007년4월30일이었다. 최종경고를 준수하기 위한 대책의 부재로, 집행위는 핀란드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http://usepa.x-y.net/zboard/zboard.php?id=world>>(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해외환경정보).

44) 이 지침에서 실제적 책임은 환경손해 및 그 직접적 위험(가까운 미래에 환경손해를 발생시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위험을 의미: 2조 9항)이 일정한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 결과책임으로 하고(3조 1항 a호), 보호대상의 중 및 자연의 생활공간에 대한 가해로써, 일정한 행위이외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책임으로 한다(3조 1항 b호).

45) Vgl. die Erwägung Nr. 6.3 und 6.8 der Begründung zum Richtlinienvorschlag.KOM Doc. 2002/0021 (DOD), S. 20, 22; Spindler/Härtel, UPR 2002, 242 (245).

46) 선진국에서는 예컨대 함부르크 시의 자연보호법(HmbNatSchG : HmbGVGBL. S. 281/2001. 최종개정



고 학설상으로도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sup>47)</sup> EU의 환경책임지침에 의한 환경손해의 개념은 수자원, 토양, 보호된 종 및 자연환경이 공중을 통하여 훼손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환경손해법 제2조 2호의 간접적 훼손이 문제된다.<sup>48)</sup>

환경영양에 기인하는 손해는 전통적인 법제도상의 구제가 가능하며, 환경재 내지 자연재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특정한 권리주체의 권리객체가 아닌 경우에도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한다면 환경손해는 좁은 의미의 손해와 넓은 의미를 손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좁은 의미의 환경손해는 권리의 객체가 아닌 환경재, 즉 ① 대기·물 등의 환경매체 및 기후, ② 야생동물·미생물 등의 생태계, ③ 경관, ④ 생물다양성, 종의 보존 등의 관념적 가치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현저한 손해(환경부하에 기인한 이외의 손해를 포함)를 말한다. 둘째 넓은 의미의 환경손해는 ① 좁은 의미의 환경손해 및 ② 권리의 객체로서의 환경재 즉 사유재산·공유재산으로서의 토지의 토양기능, 수자원, 동식물, 미생물, 역사적·문화적·자연적 유산 등에 부대하는 공공재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현저한 손해(역시 환경부하에 기인한 이외의 손해를 포함)를 말한다.<sup>49)</sup>

#### 다. 법제도화의 과제

환경손해의 미연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제도화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다음

2004년 HmbGVGBL. S. 356)이 있으며, 인위적인 환경손해는 아니고 야생동물에 기인한 환경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환경손해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7) 참고로 환경손해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손해를 포함하는 자연환경 전체를 환경재로 파악하는 개념과 개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 환경의 구성요소와 가치만을 포함하는 개념의 교착이 있었던 것, 환경오염손해와 환경재에 대한 손해와의 교착으로 보이는 것, 정의문제와 귀책문제의 교착으로 보이는 것(예컨대 원인기여도를 특정하지 못하는 원거리 및 복합오염의 경우), 환경손해의 경우 손해의 파악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예컨대 자연의 재생능력과의 관계, 환경에 대한 침습에 따라 원래 모습보다 우월한 환경이 창출된 경우, 원상회복이 오히려 환경손해를 증대시키는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의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48) Vgl. Die derischen, Grundfragen zum neuen Umweltschdsensgesetz, NJW 2007, S. 3378, 문병호, 앞의 논문, 254면에서 재인용.

49) KOM Doc. 2002/0021 (COD), S. 19.

과 같다. ① 환경법체계가 전통적 보호법이의 이외에 환경자체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sup>50)</sup> 그 외에도 환경(보전)행정법에 있어서, 환경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위적 활동(시설설치·조업, 제품의 제조·유통, 사업 활동 등)에 임하여 관할청에 환경손해의 미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② 환경손해의 발생우려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그 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법상의 구제방법보다 공법상의 간섭권한에 의하는 편이 유효하다. 이때 원인행위가 (공법상)위법행위인 경우 외, 적법행위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③ 환경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구제에도 원상회복조치 내지 대상조치실시에 관한 공법상의 간섭권한에 의하는 편이 유효하다. 이때에도 원인행위가 (공법상)위법행위인 경우 외, 적법행위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④ 상기 ②와 ③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환경손해이외의 환경손해(특정한 권리주체에 속하는 환경 및 자연재에 대한 환경손해)에는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의미의 환경손해의 경우와 동일한 제도일 필요는 없다.

#### 라. 우리나라의 과제

이상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먼저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과 미연방지조치 내지 원상회복조치·대상조치의 실시의무와 대집행비용부담의무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제도가 필요하다. 원상회복조치를 할 수 없는 환경손해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대한 상태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주 자연보호법에 기초한 보상과징금, 주 삼림법에 기초한 삼림(보수)과징금제도가 있을 뿐이다. 남극 환경책임부속서안 단계에서는 기금에 대한 거출의무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비용부담책임은 일종의 민사법적 성격을 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행 담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제도 또는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환경손해발생의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또는 환경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주체에 대해서는 시민, 이해관계자 혹은 환경보호에 대한 실적과 조직적·인적·재정적 능력을 갖춘 환경보호

50) 선진제국의 환경법은 이미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단체에 직접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혹은 공적 기관에 대해 권한발동을 구하는 간접적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 참고로 EU의 환경책임지침에서는 공적 기관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3. 공법상의 규제준수와 준수위반에 대한 사법상의 평가

#### 가. EU의 동향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책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진제국에서 정착되고 있지만<sup>51)</sup>, 손해발생의 미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지청구의 경우에는 요건사실의 평가에 임하거나 공법상의 규제를 준수하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본에서의 학설 판례와 비교한 특징적인 제도가 독일에 존재한다. 이를 테면 독일에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규정(독일민법 제823조 : 손해배상의무)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 상태에 대한 위법한 간섭에 대해서는 법익의 피침해자에게 행위위반자 또는 상태위반자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지만(독일민법 제1004조 :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sup>52)</sup>, 독일민법 제906조(불가량물의 유입), 연방 이미시온방지법 제14조<sup>53)</sup>, 유전공학법 제23조<sup>54)</sup>, 수

51) 藤井麻衣, "EU 環境ライアビリティ指令における「行政的アプローチ」-その国際法への示唆-", 「國際協力論集」 제17권 2호, 2009, 137면.

52) 독일민법 제1004조 1항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에도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 때에 유지청구권이 허용된다. 소위 이러한 반복적인 위험은 원고의 주관적인 관념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Staudinger-Karl-heinz Gursky, 1004 BGB, 12. Aufl., 1989, Rn.153. 따라서 이것은 침해의 반복이 확실하거나 혹은 최소한 명백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윤철홍, "환경이익의 침해와 유지청구", 「법률신문」 2707호, 법률신문사, 1997. 7; Medicus. D., § 1004, in : Münch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4 Aufl., 2004, 1145 ff.

53) 인근 토지에 대한 불리한 영향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조치가 기술수준에 비추어 실시될 수 없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4) 시설과 유전자조작의 조업정지 또는 개방형이용의 종결을 구하는 유지청구권을 제한한다.

관리법 제11조<sup>55)</sup> 등의 규정에서 공법우선 원칙의 특칙을 두고 있다. 독일민법 제906 조는 가스, 증기, 악취, 연기, 매연, 열, 소음, 진동의 유입 및 기타 유사한 영향을 이유로 하는 상린관계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사실에 대해서, 첫째 영향의 본질성, 둘째 본질적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의 지역적 관행적합성과 방지조치의 경제적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의 장애를 두고 있다. 이 중 전자에 대해서 공법상의 규제(법률, 법규명령, 연방 이미시온방지법 제48조에 근거하는 일반 행정규칙에 정한 배출기준, 지침)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본질성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환경보전에 관한 공법관계와 법적 구제에 관한 사법관계와의 탄력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연방 이미시온방지법 제14조는 시설의 조업으로 인한 토지의 환경영향을 이유로 하는 상린관계상의 권리에 대해서 시설인가의 취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시설조업 정지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미시온방지법상의 시설인가 등의 경우에는 시민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민 참여에 의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시민의 의견과 시민보유의 정보를 시설인가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시기가 지체된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에 따라서 분쟁의 회피 또는 조기해결을 도모하는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 나. 우리나라의 법제도

우리나라는 사법상의 위법성과 공법상의 위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은 유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판례는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55) 승인을 받은 수역이용에 의한 악영향을 이유로 하는 위반의 제거, 이용의 부작위, 방호설비의 설치 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배제에 관한 규정이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56)</sup> 이에 대한 학설로는 “생활방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근거를 그 행사요건만 충족된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한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보다는 곧 바로 민법 제217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17조의 「적당한 처분」은 생활방해를 막는 모든 조치로서 민법 제214조에서 규정한 방해배제청구권보다 구체화하고 보충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에 대해 구제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판례처럼 제21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유지청구권의 근거를 찾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방해의 인격권 및 환경권적인 요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도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sup>57)</sup>

#### 4. 책임이행의 담보제공의무

##### 가. EU의 동향

환경부하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혹은 환경부하의 미연방지와 원상회복에 관한 공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EU 국가에서는 미리 책임이행 담보제공을 의무로 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다. 즉 사업의 설치, 조업단계 혹은 조업정지 후에 법적인 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자가 부담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의 수반이 예측되는 유형의 시설의 설치·조업, 업무, 행위 등의 인·허가에 즈음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담보의 종류로서는 환경오염의 미연예방기능을 가진 은행보증, 책임보험 등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금융상품의 상품화가 요구된다. 근래에는 환경조약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책임담보를 규정하는 예도 있으며(예컨대 원자력손해민사책임에 관한 빈 조약 제3조, 폐기물월경이동에 관한 배상책임의정서 제14조,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 조약 제

56) 대법원 1997. 7.22. 선고 96다56153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57) 윤철홍, “환경이익의 침해와 유지청구”, 「법률신문」 2707호, 앞의 글 참조.

7조, 남극환경책임부속서안 등), 선진제국에서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다. 조약이외에도 독일, 네덜란드<sup>58)</sup> 등에서는 책임담보제공의 의무부여 규정이 있다.

독일에 있어서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담보제도로서는 예컨대 일정한 시설에 기인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환경책임법 제19조, 전기·가스 등의 사업시설에 관한 책임법 제1조, 유전공학법 제36조, 폐기물처리전문업자의 책임에 관한 폐기물처리전문업자령 제6조 등이 있으며, 공법상의 책임의 담보제도로서는 시설관련제도(예를 들면, 폐기물최종처리장에 관한 순환형경제·폐기물법 제32조) 업무관련제도(폐기물 운송업자법 제7조), 행위관련제도(연방 토양보전법 제10조, 폐기물월경이동법 제7조 등)에 의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이행이 담보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다.

#### 나. 우리나라의 법제도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독일법과 같은 형태로 일반화 된다면 적어도 원인자부담불능을 이유로 하는 범위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비용부담제도(예컨대 산업발전 특별조치법 등)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sup>59)</sup>

## IV. 결어

EU의 환경보전의 주요한 특징은 통합적 환경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제품관리를 들 수 있다. 1996년에 채택된 환경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지침(IPPC)에 의하여 환경개체마다의 개별의 접근에서부터 통합적 접근이 인·허가와 관련되어 구체화되었으며, IPPC 지침과 REACH, 환경공개지침, 그리고 오르후스 협약 등에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환경정보공개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2006

58) 松村弓彦, 「オランダ環境法」, 国際比較法センター, 2004, 21면 이하 참조.

59)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책임이행의 담보제공의무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지만, 일반폐기물(폐기물처리법 제8조의 5) 및 특정산업폐기물(동법 제15조 2의 3)의 최종처분장에 대해서 유지관리적립금 적립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松村弓彦, 「環境責任法制に關する國際的動向」, 『環境法』, 成文堂, 2007, 527면.

년의 EU의 수영구역 수질오염 관리정책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유럽 내 2만 개 수영 구역의 최소수질요건 준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sup>60)</sup>, 이는 국민의 환경권 및 알권리 측면에서의 모범적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정보의 수요를 전망하고 각종의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수질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가에 대응하여 새로운 물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요구된다.<sup>61)</sup>

그리고 환경책임에 대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고, 환경기준위반을 방지하여 지역 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책임지침을 채택하였다.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위험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독일의 환경손해법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는 환경손해를 자기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2)</sup> 또한 환경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주체에 있어서 공적 기관에 대해 권한발동을 구하는 간접적 권리를 EU의 환경책임지침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사를 주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sup>63)</sup>가 되고 있는 환경손해의 배상책임 혹은 환경부하의 미연방지와 원상회복에 관한 공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EU에서는 미리 책임이행 담보제공을 의무로 할 것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오염원인자의 무자력으로 책임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이행담보를 위하여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EU는 환경조약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담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오염피해의 특질에 맞는 적절한 환경오염배상책임

60) 해변 지점의 경우 지난 1990년 80%에서 2009년 96%로 증가했으며, 내륙 수변의 경우 52%에서 90%로 증가하였다.

61)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11-1호, 49-52면 참고.

62) 문병효, 앞의 논문, 257면 참고.

63)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정화하는데 약 2900억원이 투입된다. 장항제련소 주변 반경 4km 내 223만9470㎡(67만7000평) 면적의 구역이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등 유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분담비율은 오염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오염기여 비율을 각각 70%, 30%로 추정하고 있다. 즉 1400억원은 국가가 부담하되 600억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셈이다. 그러나 L사 등 기업들은 자기들이 오염원인자로 지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9. 07. 31 기사 참조.

을 위한 입법과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위한 기금제도 및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의 책임 이행을 위한 담보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sup>64)</sup> 아울러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EU의 FTA 협정시대에 맞추어 환경보전정책 과 환경책임법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신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11. 8. 5.      심사일 : 2011. 8. 18.      게재확정일 : 2011. 8. 22.

64) 한국철강부지 사건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한 산업용지의 경우 부지의 일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부지들은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상 정화책임을 당사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화책임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이에 못지않게 유발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채영근,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09면 이하 참조.



## 참고문헌

- 공성용·김상헌, “유럽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의 논의 동향”, 「환경 포럼」 제8권 제15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 공성용외 3인, “제품군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 통합제품정책(IPP) 도입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 김기순,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월간법조」 통권 제629호, 법조협회, 2009.
- 김현준, “환경사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김혜영외 2인, “유럽연합 통합환경관리지침(IPPC Directive)의 변화”, 「학술발표자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8.
- 문병효, “독일환경손해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제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0.
- 소병천, “최근의 국제법 입법소개 Åarhus 협약”,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 윤철홍, “환경이익의 침해와 유지청구”, 「법률신문」 2707호, 법률신문사, 1997.
- 전재경,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채영근,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한상훈,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제3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 Gerhard Igl(번역: 서보국), “Umwelthaftungsrecht in Deutschland”, 「환경법과 정책」 제5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2010.
- 藤井麻衣, “EU環境ライアビリティ指令における「行政的アプローチ」—その国際法へ

の示唆—”, 『國際協力論集』 제17권 2호, 2009.

松村弓彦, “環境責任法制に關する國際的 動向”, 『環境法』, 成文堂, 2007.

松村弓彦, “ドイツ環境損害責任法案と環境損害”, 『環境研究』, 139号, 2005.

BOYLE, Alan, Globalising Environmental Liability : The Interpla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1, 2005.

Fischer/Fluck, *RIW* 2002, 814 (816 f.).

FITZMAURICE, Malgosi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 Bodansky, J. Brunnee & E. Hey (eds.), 2007.

Gassner, E., Der Ersatz des ökologischschädens nach geltendem Recht. UPR, 1987.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Produkthaftungsgesetz, vom 15. 12. 1989, BGBl. I 1989.

M.G. Faure and J.G.J.Lefever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an Economic Appraisal”, Lowe and Ward, *British Environmental Policy and Europe*, 1998.

Rehbinder, E., Ersatz ökologischer Schäden, *NuR* 1988.

Vgl. die Erwägung Nr. 6.3 und 6.8 der Begründung zum Richtlinienvorschlag, KOM Doc. 2002/0021 (DOD).

위터저널, 물사랑신문사, 2011. 6월호.

산업연구원, “EU REACH 제도시행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KIET 산업경제』, 2008. 9.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31호, 2008.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11-1호 ; 2010-1호 ; 2009-7호.

<http://usepa.x-y.net/zboard/zboard.php?id=world>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09073107421945053&type=1>

[http://ec.europa.eu/consumers/dyna/rapex/rapex\\_archives\\_en.cfm](http://ec.europa.eu/consumers/dyna/rapex/rapex_archives_en.cfm).

**[Abstract]**

## A study on the Trend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liability law in European Union

Cho, Eun-Rae

Environmental policies of a prevention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a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an action first for source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polluter pays principle has been carried out in European Union. Under these principles, the features of environmental policy can be sai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civic participation, and product management. An integrated approach for environment object was materialized with respect to the permission according a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has been established by IPPC, REACH, Environmental Public Directive, Aarhus Treaty.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implemented the policy which regulates from manufacturing steps to measur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by releasing Integrated Product Policy(IPP) in 2003. The Bathing Water Directive(76/160/EEC, as revised by 2006/7/EC) sets water quality standards for bathing waters.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tive, the compliance ratios of minimum water requirements were reported to have risen in swimming section 20000 of the European.

The trend of EU 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as adopted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2004/35/EC) to prevent violations of environmental standards and comply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his directive is prescribed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responsibility for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It shows the tendency to institutionalize strict liability in civil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Restitution measures and prevention measures are required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damages. When these measures are not possible, there is a need for responsibility implementation system such as Pollution Compensation Liability

Law, Fund Act for the cost of purification and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Polluters must be removed at his own expense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Germany.

We must respond flexibly in order to advanc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주 제 어 유럽연합 환경보전, 환경정보공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통합적 제품관리, 오르후스 조약, 환경손해, 환경책임법, 책임이행담보

Key Words EU environmental preserv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REACH, Aarhus Treaty, Integrated Product Management, Environmental damages,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Responsibility Implementation Security